

# IFRS 9 개정방향에 따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고찰

정 호 준\*

## 요약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연합 재정위기로 인해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39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이 2011년 1월부터 진행해 온 개정방향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실무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주제별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의 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금융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사업모형의 정의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계약현금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폭 넓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손상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손상기준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재무프로세스와 금융기관의 기반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의 개정방향이 금융기관의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위험관리전략을 실무상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 유효성에 대한 양적 지표를 삭제하고 복잡성을 경감하였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렬(rebalancing)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실질적으로 실무 적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수년 간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용 시 예상되는 시사점을 검토한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IFRS 9 개정, 금융상품

\*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974hojun@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12-07-25

〈논문 수정일〉 2012-08-20

〈게재 확정일〉 2012-09-06

## I. 서 론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등은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도입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재무정보시스템, IT인프라시스템, 자산유동화 등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다.<sup>1)</sup>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새로운 기준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에 따라 2008년 이후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IAS 39 금융상품의 개정작업은 단일의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자산에 대한 인식(분류)과 측정(평가)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기준에 대한 개정방향은 현재의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과 보완의 형태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39 금융상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인 IFRS 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대한 개정 단계를 1단계 분류 및 측정(Recognition and Measurement), 2단계손상(Amortised cost and impair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의 3단계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 분류 및 측정(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2단계 : 손상(Amortised Cost and Impai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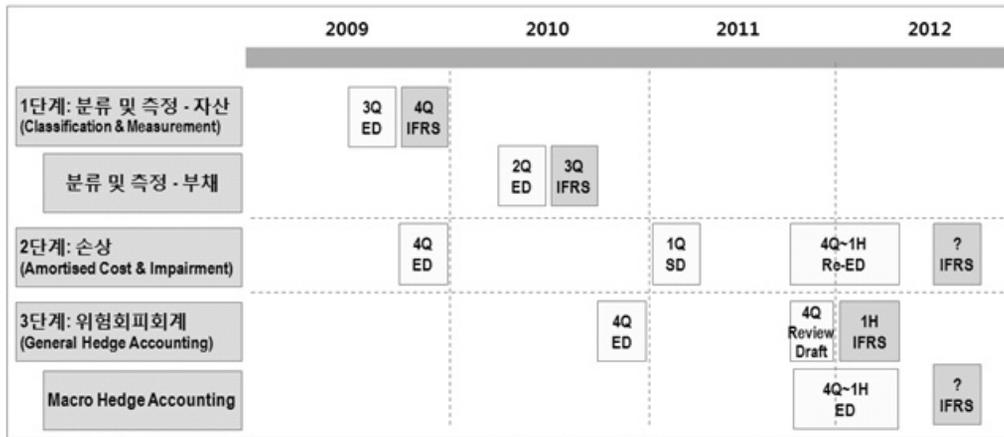
3단계 :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분류 및 측정”에 대해 2009년 12월에 금융자산 기준을 개정하여 IFRS 9을 발표하였으며,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과 2010년 12

1)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2009.12).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1.7.1 개정시행세칙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5년 간 유예되었다.

월에 공개초안(ED)을 발표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기준서 개정작업을 2012년 말까지 완료하면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최종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류 및 측정”의 의무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이며, “위험회피회계” 의무적용시기는 공개초안상 “분류 및 측정”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손상”의 의무적용시기는 공개초안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분류 및 측정”과 “손상”은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상” 및 “위험회계회계”의 개정작업 지연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용시기 조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IFRS 9의 의무적용시기를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공개초안(ED)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sup>2)</sup>

[그림 1] IFRS 9 개정에 대한 진행 경과



(\*) ED: 공개초안, SD: 추가공개초안, Re-ED(Re-exposure or review draft): 공개초안 재발행 또는 검토문서 발행, IFRS: 기준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인 IFRS 9은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 프로세스, 시스템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기관은 비교공시 의무에 따라 2010년 초 개시재무제표부터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IFRS 9 적용 시에는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은 IFRS 9의 개정 추이, 주

2) IFRS 9 : Financial Instruments(IFRS기준서별 해설), 삼일회계법인, IFRS 9 개정 진행경과(2011.10).

요 내용 및 실무 적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금융기관이 IFRS 9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B)의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금융기관의 실무 적용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IFRS 9에 대한 규정 적용 시에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II절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 논의사항을 검토하고, III절에서는 실제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금융상품기준서인 IAS 39와 개정이 진행 중인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실무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IV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및 개정된 규정의 검토

### 1.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들은 크게 IFRS를 도입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 또는 의무도입 일정에 앞서 조기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IFRS 적용으로 산출된 회계정보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최성호, 김인수, 최관의 논문<sup>3)</sup>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자발적으로 조기도입한 기업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여 보이고 싶어 하는지와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순이익과 순자산의 조정액이 기업가치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을 갖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K-GAAP적용 시 ROA(ROE)가 낮을수록 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 시 ROA(ROE)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조기 도입 기업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한 이익조정 유인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한편, 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시 주당순이익의 전환 조정액은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주당순자산의 전환조정액은 유의적인 가치관련

3)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이익특성과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 최성호, 김인수, 최관(2011).

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론을 기술하였다. 주당순자산의 전환조정액을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종업원급여관련 부채, 지분법적용 주식 평가액, 기타 조정액으로 나누어 보아도 어느 항목도 유의적인 가치관련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노옥진(2010)<sup>4)</sup>의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 관점에서의 재무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노옥진(2010)은 은행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순자산변동효과와 도입시 실무상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 결과 은행이 IFRS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연결대상범위 차이와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기준서의 변경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의 변경은 은행에서 적립하여야 하는 IFRS 발생손실충당금이 기존 K-GAAP에서 요구하는 최소적립충당금보다 작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무적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중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평가와 관련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영향을 자기자본 비율산출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한 최재웅(2011)<sup>5)</sup>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규정과 자기자본비율(BIS) 산출제도를 IFRS도입과 연계하여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의 변경이 자기자본비율(BIS)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최소적립충당금과 비교해 볼 때 IFRS도입에 따른 발생손실충당금의 적립 규모는 다소 작아지고 이에 따른 은행의 손실흡수력 감소로 인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2011년 3월부터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최소적립충당금보다 IFRS 발생손실충당금의 적립규모가 작을 경우 은행의 이익잉여금 처분제한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은행의 경우 각 여신의 호별 특성에 따라 리스크측정기준 상 예상손실(Expected Loss)과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최소적립충당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과 IFRS도입에 따른 발생손실충당금의 적립 규모의 차이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은행의 경우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최소적립충당금과 IFRS도입에 따른 발생손실충당금의 적립 규모의 차이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sup>6)</sup> 이 밖에도 IFRS 적용으로 산출된 회계정보의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옥진(2010).

5)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 : 대손충당금설정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최재웅(2011).

질을 측정할 연구로K-IFRS의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홍승민, 2012)이나 IFRS 조기도입의 주요 특징 및 재무제표 영향에 대한 연구(송인만 외 2인, 2010)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IAS 39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현행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일부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 및 분류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및수취채권 및 파생상품 등 5가지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평가, 손상기준 그리고 위험회피회계와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등에 대한 규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금융상품의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및수취채권 및 파생상품금융상품의 각 유형별 정의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정의 등
금융상품의 제거	금융상품자산의 제거 조건과 진정양도(True Sale) 등
금융상품의 최초 측정	상각후원가, 공정가치, 공정가치 적용 Level 등
금융상품의 후속 측정	손상(Impairment)의 정의, 손상사건, 대손충당금, 환입
금융상품의 손익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등
위험회피회계	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유효성 검사(Effective Test) 등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의 정의, 분리조건 등

그러나, 금융상품의 인식기준에 대하여 만기보유증권과 대여금및수취채권의 구분의 모호함, 공정가치 평가대상에 대한 회계기준의 복잡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견들이 제시되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여신(대출채권)과 미수금 등 수취채권에 대한 구분 적용도 실무 적용

6) 2010년 8월 24일 '은행업 감독규정 정비방안' 및 2010년 11월 17일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변경(안) 참조.

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또한, 손상기준에 대해서도 손상의 정의와 손상사건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적용으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정색을 초래하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새로운 기준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로 연결되어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더불어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은 정리한 결과<sup>7)</sup>는 다음과 같다.

- \* 규정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적용 이해 해석의 어려움
- \*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의 기본 방향과 달리 다수의 예외규정들의 존재
- \*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손상관련 규정의 불일치
- \* 부채발행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시 오히려 이익을 인식하는 불합리한 회계처리
- \* 미국회계기준(US-GAAP)과 다른 규정이 많아 비교가능성 저하

### 3. IFRS 9의 개정방향과 진행경과

이러한 IAS 39의 문제점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인 IAS39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 3월에 토론회(Discussion Paper : DP) ‘금융상품보고의 복잡성 감소’를 발표하여 금융상품 기준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을 접수하였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G20 정상회의 및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은 원칙 중심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새로운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을 개선 단순화하도록 촉구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회계기준(US GAAP)과의 일치화(convergence)를 위해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 6월에는 금융자산의 손상 또는 대여금대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에 대하여 2015년 이전까지 상호의 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내부 일정을 수립하였다.

7) Exposure Draft by IASB: ED/2009/7, Financial Instrumnets: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 III. 금융기관의 실무적용 검토

#### 1. IAS 39의 적용 사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 특히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의 도입은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정보시스템, IT인프라시스템, 자산유동화에 대한 실무적인 관행 등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대응노력을 경주하였다.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와 연계된 금융기관, 특히 국내 시중은행들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의 도입에 따른 주요 대응 노력

구분	금융기관의 주요 대응노력
금융상품의 분류	IAS 39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를 위한 COA(Char of Account) 재정의 등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내재파생상품의 정리, COA변경, 분리 프로세스 수립 등
파생상품 공정가치 및 위험회피회계	유효성 검사(Effective Test) 수행방법론 및 문서화 등 파생상품 공정가치 측정 시스템 등 위험회피회계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유효이자율법 측정	유효이자율법 측정을 위한 Segmentation, 측정로직 개발 등
손상의 정의	신용리스크측정방법에 따른 부도정의와 손상 비교 등
손상 측정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활용한 대손충당금 시스템 구축 등 (PD/LGD법, Roll Rate, Migration 등 <sup>8)</sup> ) Discounted Cash Flow 방법(DCF) 등 개별평가 프로세스 정립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연결기준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프로세스 정비
금융상품의 제거	진정매각(True Sale) 요건 불충족 자산유동화 기초자산/부채의 환원을 통한 금융상품 분류, 손상 측정 프로세스 수립 등
여신 및 리스크 공시	대여금및수취채권 등 여신 및 신용리스크, 환리스크 등 IFRS 7 금융상품의 공시에 관한 리스크공시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

8) PD/LGD법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측정방법론 중 내부등급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산출(BIS 비율)방법론으로서 예상손실을 산출하기 위한 PD(Probability of Default), LGD(Loss Given Default) 등 리스크 구성요소를 경험치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Roll Rate의 경우 신용카드 등 무담보 신

이러한 금융기관의 노력으로 인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IAS39금융상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는 비교재무제표를 포함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규정의 개정안이 도출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들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개정 준비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금융상품의 손상과 관련하여 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IAS39금융상품 기준서가 기술하고 있는 손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발생주의 개념에서 발생손실 총당금을 산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생손실(Incurred Loss) 개념은 금융기관들이 신용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활용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sup>9)</sup>의 자기자본비율산출을 위한 예상손실(Expected Loss) 개념과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발생손실(Incurred Loss)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신용위기가 도래되었을 때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 잠재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일시적인 신용경색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었으며, 이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로 발전되었다.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인식하여야 한 손상규모가 달라지고 이로 인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비판이 금융기관, G20 국가 및 정상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단독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금융상품 손상과 관련하여 예상손실 개념의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2009년 12월 17일 금융회사의 외부충격에 대한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의 질(quality)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Basel 3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 안에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확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기본자기자본비율<sup>10)</sup>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번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안은 개정 방향에 따라 다시 한번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정보시스템, IT인프라시스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과 이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여신에 대한 연체구간 별 연체전이율을 경험손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고 Migration은 자산건전성 또는 신용등급의 전이현상을 고려하여 전이구간 별 전이율을 산출하고 이에 손실률을 반영하여 손상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9)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 10) BCB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비율)은 보통주 및 이익잉여금(유보이익)으로만 구성된 우월적 자기자본을 의미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9일 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2. IFRS 9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09년 12월부터 진행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 추진은 다시 한번 금융기관들의 기준서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개정준비 작업 뿐 아니라 개정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수행하여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KASB) 또한 이를 위한 2010년 9월부터 은행연합회와 함께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여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실무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 1단계 프로젝트(분류 및 측정)

“분류 및 측정”기준은 금융상품의 분류를 단순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가능하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분류 및 측정기준”은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 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 경우 비교정보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상품의 분류는 기존의 IAS39 금융상품 기준서 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분류에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상 사업모형의 목적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대상과 상각후원가 대상으로 그 분류를 단순화하였다. 즉,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일 경우는 상각후원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모두 공정가치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사업모형이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된 주요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보다는 실제로 그 금융상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외부에 보여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인 경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자산이 표시되는 통화인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sup>11)</sup> 이를 상각후원가

11) 계약상 현금흐름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다른 레버리지 조건 없이 표시통화의 인플레이션 지수에 연동
- 복수의 만기연장옵션(예 : 영구채)
-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조기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잔여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부담하는 조기상환수수료가 계약의 조기 종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콜옵션과 풋옵션
-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 또는 변동환율에서 고정환율로 이자율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 이자율 캡(caps), 플로어(floors) 및 칼라(collars)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또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복합금융자산의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단, 복합계약의 주계약이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IAS 39와 동일한 검토가 필요하다.

#### □ 2단계 프로젝트(손상)

2009년 11월 최초 공개초안의 “손상(Impairment)”기준에 대한 의무적용시기는 최종 개정안 발표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 제공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추가공개 초안에서는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나 적용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의무적용시기는 현재 불명확한 상태이다. 발생손실(Incurred Loss)과 손상(Impairment)의 정의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신용손실의 인식시기를 금융기관의 예상손실(Expected Loss) 측정 방법보다 지연되어 인식하게 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자수익에 대하여 유효이자율 산정 시 미래기대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상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대손실 모형을 적용한 손상기준에 대해 2009년 11월 최초 공개초안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추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추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 따라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three-bucket approach를 검토 중에 있다. IASB는 three-bucket approach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4분기 또는 2012년 상

- 그 이자율이 채권자에게 시간가치를 보상하는 경우,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에서 이자율 재설정일에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옵션(예 : 3개월 LIBOR를 3개월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거나 1개월 LIBOR를 1개월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옵션)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주가지수나 채무자의 손익 또는 다른 변수에의 연동
- 시장이자율과는 반비례하는 금리를 지급
- 잔여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지 않는 금액에 행사하는 조기상환선택권
- 발행자가 이자수취를 이연할 의무가 있거나 이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이연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이자율이 채권자에게 시간가치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율 재설정일에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옵션(예 : 1개월 LIBOR이자율을 3개월의 기간에 적용하거나 적용 이자율은 1개월 LIBOR인데 재설정일은 매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변동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지만, 그 이자율이 5년 만기 채권에 대해 항상 5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 이자율은 최초 시점 이후에 금융상품의 만기를 반영하지 않음.
- 채무상품이 주계약인 경우의 지분전환 옵션(보유자 입장에서)

반기에 공개초안 재발행 또는 검토문서 발행(re-exposure or review draft)을 계획하고 있다. 논의된 손상기준에 대한 실무적용 이슈 등은 '3. IFRS 9의 금융기관 적용 시 주요이슈'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 3단계 프로젝트(위험회피회계)

공개초안에서는 확정된 “분류 및 측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제안하고 있으며, “분류 및 측정”, “손상” 기준의 소급적용 원칙과는 달리 위험회피회계는 소급적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진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또는 상품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것이다. 현행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은 위험회피활동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정된 것으로서 IFRS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현행 요건이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와 연계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현행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규정 중심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건<sup>12)</sup>은 삭제되었고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중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주요 조건이 일치하는 간단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질적 요건만으로도 유효성 평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단, 손익회계처리를 위해 비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측정은 간단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IFRS 9의 의무적용시기 연기에 대한 공개초안(ED, 2011. 8. 4)

IASB는 IFRS 9의 일부 과제(손상, 위험회피회계)의 개정작업 지연, 이해관계자들의 적용시기 연기 요청 등에 따라 IFRS 9의 의무적용시기를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ASB는 2011년 8월 4일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10월 21일까지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IFRS 9 의무적용시기의 연기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1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유효성의 범위를 의미하며, 현행 기준은 80%~125%의 유효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여 대부분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위험회피 관리 기법들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성이 다소 낮았다.

### 3. IFRS 9의 금융기관 적용 시 주요 이슈

현재까지 살펴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자.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금융상품의 회계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성급히 기준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판이 존재하며, 또한,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시스템으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기준서를 개정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개념체계, 공정가치 측정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와 같이 개별 기준의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회계기준의 전체적인 체계가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선행된 후 그러한 체계에 비추어볼 때 개별 기준서의 개정이 필요한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 후 다른 프로젝트에 의해 또 다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준서 개정의 개별 내용 보다는 기준서 자체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13)</sup>

#### (1) 금융상품 분류의 단순화에 대한 고찰

##### 1) 금융상품 분류의 개정방향

현재까지 논의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금융상품 기준서의 개정 방향 중 1단계는 금융상품 분류의 단순화이다. 즉, 금융자산의 기존 4가지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를 2가지 범주(공정가치대상, 상각후원가대상)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공정가치대상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또는 기타포괄손익인식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를 통해 기존 금융상품 기준서보다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융자산의 분류시 판단기준으로 사업모형(Business Model)과 금융자산의 특성(Characteristic of Financial Assets)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각후원가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13) 한국회계기준원(KASB) 및 은행연합회 사전 설문 조사 자료(2010).

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상각후원가 대상의 기준은 ①기본적인 대여금 특성(basic loan features)이 있고 ②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managed on a contractual yield)되는 금융상품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이란 특정일에 ㉠ 원금(채무자에게 선지급된 금액)과 ㉡ 원금에 근거한 이자(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상품의 발행자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를 지급하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계약상의 조건을 의미한다. 또한, 상각후원가법에 따른 회계처리 및 유효이자율법의 목적(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을 배분)과 일관되어야 하며,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확대(이자의 경제적 특성이 아님)시키는 레버리지(옵션이나 선도계약 및 스왑계약의 일반적인 특성)는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이 아니다. 그리고,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사업 모형(Business Model)이 금융상품의 보유 혹은 발행으로 발생할 계약상의 현금흐름의 수취 및 지급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평가되는 경우이며 개별 상품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와 사업모형은 다른 것이다. 즉, 사업모형의 분류단위는 사업모형은 금융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보다는, 실제로 그 금융상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외부에 보여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BC 4.20).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모형이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sup>14)</sup>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만기 이전에 매도하거나 이전하는 거래가(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지급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거래는 보고실체의 영업 모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매출채권·채무, 계약기간 동안 수취할 계약상의 원금 및 이자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상품,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 및 계약상의 이자에 근거해 관리되는 발행된 사채 등이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상기 개정안은 기존 만기보유금융상품에 대한 분류제한규정(Tainting rule)<sup>15)</sup>을 분류의 단순화를 위해 삭제하였다. IAS 39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엄격한 분류제한규정(tainting rule)과는 달리, IFRS 9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였

14) 예를 들면, 한 보고실체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얻기 위해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공정가치 변동의 실현을 위해 거래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15)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중요하지 않은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분류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IAS 39 문단 9).

다. 경과규정으로서 최초 적용시점에 존재했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되는지를 판단하며, 그러한 분류는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단순화 작업은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적용할 때는 단순화를 하기 위한 판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의 대출여신은 상기에서 언급된 사업모형 및 계약현금흐름의 특성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여신을 유동화 할 경우 사업모형 조건이나 계약현금흐름의 특성을 반드시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출여신을 유동화 할 때 그 목적이 부실채권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거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동화일 경우 사업목적의 분류 단위를 유동화 이전으로 볼 것인지 유동화 이후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드물지 않게 매도가 일어난다면 기업은 그러한 매도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과 일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의 사업 등이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관리한다면 이러한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 모형(Business Model)에 대한 판단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원가보다는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지분상품에 대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가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IAS 39의 예외규정을 IFRS 9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IFRS 9를 적용하는 모든 회사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 및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피투자자의 성과나 영업에 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 특히 비금융회사들이 비시장성주식 등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의 어려움과 그 측정치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으나 금융상품 측정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외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 가

16) 금융자산의 매도가 발생하더라도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 예시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 (1) 그 금융자산이 더 이상 기업의 투자 정책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  
(예 : 그 자산의 신용등급이 기업의 투자 정책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2) 보험자가 기대 듀레이션(즉, 기대 지급시기) 변동 반영을 위해 보험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경우
- (3) 자본적 지출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능한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추정치 범위가 넓고 그 범위 내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낼 경우의 제한된 상황에서는 원가가 오히려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제한된 상황들을 기준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 작성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다만 금융기관 및 투자펀드 등의 경우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위의 제한된 상황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BC 5.18).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특정 사례<sup>17)</sup>의 경우 또는 관련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아니므로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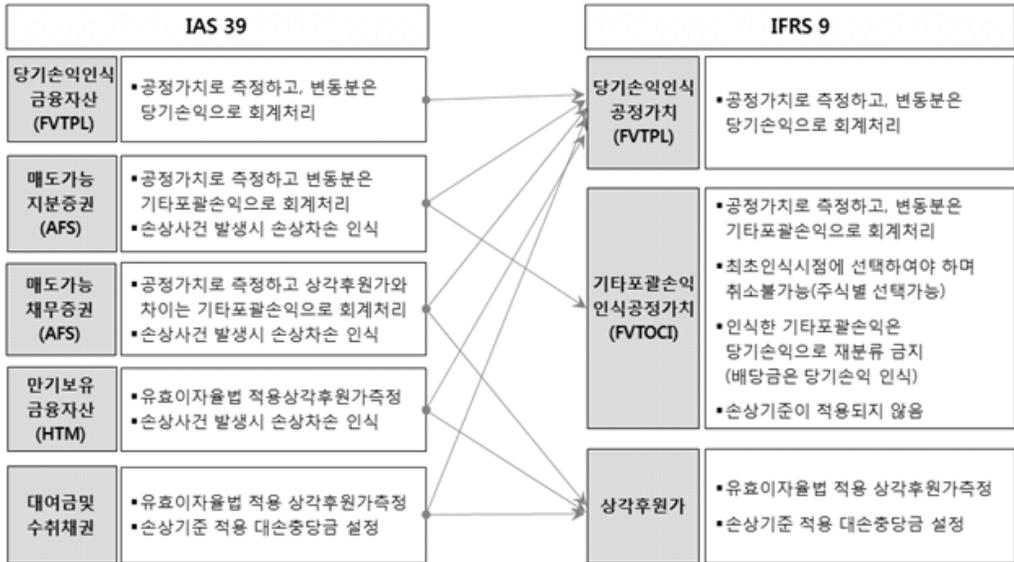
## 2) 금융상품 분류의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금융기관 입장에서 사업모형을 실무 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사업목적에 기초한 정책결정의 문서화가 필요하고 이는 회사의 성과평가 기준, 사업부문 또는 부서의 직무 범위 등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사업모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사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주인수권, 교환권, 전환권 등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사모사채는 현행 IAS 39에 따라 주계약은 대출채권, 전환권 등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IFRS 9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복합계약 현금흐름으로 보아 공정가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실무 적용상 문제점들과 판단사항들을 고려하여 IFRS 9 금융상품 분류를 적용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과거 기초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 아래 [그림 2]와 같은 매핑(Mapping)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교공시를 위한 재무정보와 주식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17)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B5.4.15).

- 예산, 계획 혹은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
- 피투자자가 달성할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기대가 변동한 경우
-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국제 경제 또는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비교가능한 기업의 성과 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의한 가치평가에 유의적변동이 있는 경우
-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피투자자의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 피투자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신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에 의한 외부 거래의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림 2] 향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분류 방향



## (2) 손상(Amortised Cost and Impairment)에 대한 고찰

### 1) 손상기준에 대한 개정방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시장의 정보이용자 및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IAS 39의 손상인식방법인 발생손실(Incurred Loss)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하여 인지하여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제 손상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기대신용손실 인식이 지연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손실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발생손실 모형을 기대손실 모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대손실 모형을 적용한 손상기준에 대해 2009년 11월 최초 공개초안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추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추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 따라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sup>18)</sup> 제시를 목적으로 three-bucket approach를 검토 중에 있다.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기준에 대한 비판으로 초래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손상기준의 논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8) IASB에서는 이를 Single Impairment Model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손상 기준에 대한 논의 진행 경과

손상 기준	주요 내용	추가 비판
기대현금흐름접근법 (Expected Cash Flow: Integrated EIR)	기대현금흐름에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의 잔여존속기간 동안 예상되는 신용손실이 반영됨. 이렇게 산출된 유효이자율(Integrated EIR)을 통해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 동안(이자수익과 신용손실을 모두 포함한) 손익이 매기간 일정한 수익률로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기준 단일화 적용 목적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회계처리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대손실모형의 실무적용상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급격한 이자수익 인식액 감소 예상
Decoupled EIR approach	실무적용의 간편함을 위해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 유효이자율을 산출하지 아니함. 또한, 정상채권 집합(good book)과 회수불확실채권 집합(bad book)의 구분하여 손상 인식	집합(good book)과 회수불확실채권 집합(bad book)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고민
기간비례법(time-proportional approach)	기대되는 신용손실 중 포트폴리오의 총 존속기간 대비 경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 설정	인식하는 기간과 기산일에 대한 모호함 (잔존기간에 대한 고민)
대손충당금 최저한도 (Floor approach)	FASB의 요청에 따라 US-GAAP의 실무상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Best Estimation 개념을 기간비례법에 추가하여 도입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예측가능한 미래(foreseeable future)를 최소한 12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견
Single Impairment Model(Three-bucket approach)	손상 회계처리의 일반적인 방법론(general approach)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 신용위험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안을 제시	채무증권, 단기채권, 미사용약정 등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 손상모형으로 제시하지만 결국 Bucket 별 방법으로 구분

현재까지 진행된 손상기준서의 최종안인 Three-bucket approach는 Bucket 1은 기대현금흐름(ECF) 접근법, Bucket 2와 Bucket 3에 대해서는 추가공개초안(SD)의 부실채권집합(bad book)과 같이 잔여만기 동안의 기대신용손실 전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Bucket 3의 총 기대신용손실이 Bucket 2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Bucket 3의 경우 개별적으로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손실발생 금액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개정에 대한 추진력을 다소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 논의된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실무적용 관점에서 필요하다.

## 2) 기대현금흐름접근법(Expected Cash Flow : Integrated EIR)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9년 11월, 기대손실 모형의 최초 공개초안인 기대현금흐름접근법(Expected Cash Flow: Integrated EIR)을 발표하였다.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은 기대현금흐름을 통해 유효이자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기대현금흐름에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의 잔여존속기간 동안 예상되는 신용손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산출된 유효이자율(Integrated EIR)을 통해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 동안(이자수익과 신용손실을 모두 포함한) 손익이 매기간 일정한 수익률로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공개초안에 따른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을 통한 손상측정대상은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FVTPL) 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모두 반영되고, 기타포괄손익인식공정가치(FVTOCI) 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상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의 실제 적용시 어려움을 우려하여 동 공개초안상 실무적 간편법을 제시하였다. 기대현금흐름접근법의 실무상 어려움 중 하나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 유효이자율의 산출이다. 실무적으로 손실 금액 및 시점을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유효이자율 산출과 연계시키는 작업 또한 시스템 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 유효이자율을 산출하지 않는다. 즉 유효이자율의 산출과 기대신용손실의 산출을 분리하여 적용한다. 실무적 간편법의 목적은 단순화된 계산 결과가 원칙적인 유효이자율 적용 결과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원가절감효과가 큰 방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실무적 간편법은 추가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decoupled EIR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3) 추가공개초안 : Decoupled EIR approach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1년 1월 31일 결국 최초 공개초안을 보완하는 추가공개초안(Supplementary document to ED : SD)을 발표하였다. 추가공개초안이 공표된 배경은 1) 최초 공개초안의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2) IFRS와 US-GAAP의 일치화(convergence)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초 공개초안의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으로는 대출의사결정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자 대출실행시점에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유효이자율 측정시 반영('integrated' effective interest rate)하여 손상 금액이 기간별 이자수익에서 차감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는 회계처리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대손실모형의 실무적용상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수 제기되었다. 따라서 추가공개초안에서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 계산시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유

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의 인식과 신용손실 예상에 따른 대손충당금 인식과정을 구분 ('decoupled' effective interest rate)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FRS와 US-GAAP의 일치화(convergence)를 통해 대손충당금 접근관점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초 공개초안에 따르면 IASB는 대출의사결정시 기대신용손실이 금리 책정에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손익 적정성 관점을 견지했다. 그러나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의 공동논의과정에서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소충당금잔액 유지조건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또한, 새로 발표된 추가공개초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두 개의 집합으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산정방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추가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손상모형은 개방형 포트폴리오(open portfolio)<sup>19)</sup>로 관리되는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에 적용하며, 만기가 짧아 현재가치 할인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또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업 내부의 금융자산 관리방법(신용위험 관리시스템)에 기초하여 채권 집합을 구분해야 하며,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도 보충적인 수단을 통해 채권을 구분해야 한다. 즉, 정상채권 집합(good book)과 회수불확실채권 집합(bad book)의 구분을 하여야 하며, 보충적인 수단으로 연체기간 및 잔여기간 기대수익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거나 또는 경영진의 판단 등으로 채권 집합을 구분 가능하다. 정상채권 집합은 약정상 일정에 따라 원리금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회수불확실채권 집합은 신용도 하락으로 회수가능성이 악화되어 자산관리의 일차적인 목적이 당해 자산의 회수로 변경된 채권을 의미한다.

① 정상채권 집합(good book)의 대손충당금 산정

정상채권 집합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잔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 중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기간비례법)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FASB의 의견을 받아 들여 예측가능한 미래(최소한 12개월 이상)의 기대신용손실액을 최소충당금잔액(floor)으로 유지하도록 최저한도(minimum impairment allowance amount)를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 Max(기대신용손실 중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예측가능한 미래의 기대손실액\*\*)

\* IASB 견해(기간별 손익의 적정성 관점) : 기간비례법  
 \*\* FASB 견해(대손충당금 잔액의 적정성 관점) : 대손충당금 최저한도

19) 개방형 포트폴리오(open portfolio) : 편입자산의 구성이 수시로 변동되는 자산 집합. 포트폴리오의 존속기간 동안 발생, 매입, 상환, 매각 또는 제각 등을 통해 편입 자산이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② 회수불확실채권 집합(bad book)의 대손충당금 산정

회수불확실채권 집합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잔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text{대손충당금} = \text{총 신용손실(entire amount of expected credit losses)}$$

## 4) 추가공개초안 : 기간비례법(time-proportional approach)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표한 기간비례법(time-proportional approach)은 기대되는 신용손실 중 포트폴리오의 총 존속기간 대비 경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추가공개초안에서 손상과 이자수익의 인식을 구분하는 것으로 손상모형을 수정하였지만, 손상의 인식을 상각후원가대상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정의 일부로 파악한 기존 공개초안의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즉시 인식하지 아니하고 포트폴리오의 존속기간 동안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비례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매기간 갱신된 포트폴리오 기대신용손실을 경과기간(weighted average age) 및 존속기간(weighted average life)의 비율에 따라 재배분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한다.

$$\text{기간비례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 \text{잔존기간 기대신용손실} \times \frac{\text{가중평균경과기간}}{\text{가중평균존속기간}}$$

(\*) 정액법 가정

5) 추가공개초안 : 대손충당금 최저한도(Floor) - 예측가능한 미래의 기대손실  
(expected loss in foreseeable futur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의 공동논의과정에서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FASB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손충당금 최저한도(minimum impairment allowance amount) 유지조건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기대신용손실을 전체존속기간에 안분하는 기간비례법(time-proportional approach)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신용손실이 존속기간 초기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손실 발생시점에 기적립된 대손충당금이 신용손실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비례법(time-proportional approach)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더라도 예측가능한 가까운 미래(foreseeable future)에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충당금은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신설하였다. 예측가능한 미래(foresseeable future)는 특정한 사건과 상황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신용손실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미래 기간을 의미하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예측가능한 미래(foresseeable future)를 최소한 12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단, 잔존존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잔존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 6) 추가공개초안 : Single Model(Three-bucket approach)

현재 Staff Paper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방법론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의 공동작업 결과인 추가공개초안(SD) 발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은 그 실무적용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IASB의 관점(good book : 기간비례법, bad book : 총 예상신용손실 충당금)과 FASB의 관점(예측가능미래의 기대신용손실)을 절충한 정상채권 집합(good book) 충당금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와 US-GAAP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손상 모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에 IASB는 IASB와 FASB의 견해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추가공개초안(SD) 제시 방법으로 충당금 설정방법을 확정하거나 또는 기존 제시안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IASB와 FASB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지 못했다. 또한 추가공개초안(SD) 제시 방법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했었던 방법론(최초공개초안(ED)과 추가공개초안(SD))을 수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IASB는 2011년 6월의 내부 논의를 통해 최초공개초안(ED)과 추가공개초안(SD)을 수정한 새로운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인 three-bucket approach를 제시하고, 현재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IASB와 FASB의 내부 논의 결과(staff paper)로서 아직 IASB와 FASB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Three-bucket approach는 추가공개초안(SD)의 정상채권 집합(good book)과 회수불확실채권 집합(bad book)을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 3가지 Bucket으로 대체하고 Bucket별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계상 충당금의 개념 이해도를 높이며 기대신용손실 변동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 ① Three-bucket approach 의의 및 적용범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three-bucket approach의 도입 목적을 IFRS 9 손상 회계처리의 일반적인 방법론(general approach)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 신용위험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IASB는 원칙적으로 three-bucket

approach를 채무증권, 단기채권, 미사용약정 등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의 손상모형(single impairment model)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② Bucket의 구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정의하는 Bucket은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단계별 채권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출은 최초 실행 이후 신용위험이 높아지다가 기대신용손실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부실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을 3단계의 Bucket으로 구분하고 있다. Bucket별 구분 방안(approach to bucketing)은 대상채권을 3개 bucket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i) 내부 또는 외부 신용등급(credit rating) ii) 감독규정상 분류(5단계 건전성 분류) iii) 소매여신의 연체상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Bucket간의 이동(transfer between the buckets): bucket1과 bucket2간의 이동하는 기준 설정에 대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총 기대신용손실(full remaining lifetime expected losses)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bucket1에서 bucket2로 이동시 설정방법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 Bucket 1 : 미래 손상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 관측되지 않은 채권으로 Bucket 2 또는 Bucket 3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 Bucket 2 : 미래 손상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기대손실이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권
- \* Bucket 3 : 미래 손상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기대손실 발생 자산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채권

## ③ Bucket 별 대손충당금 산정 방법

### ㉞ Bucket 1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2011년 6월 SP(staff paper)에서는 Bucket 1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변동분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논의결과에 따르면 bucket 1에 대한 대손충당금 산정방법이 A안(현재 기대신용손실의 1년(or 2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방안은 Basel II의 적용방법론이나 현행 IAS 39의 적용방법론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미치는 실무 적용상 영향도가 최초 공개초안(ED)나 추가 공개초안(SD)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제시방안 (staff paper, 20011년 6월)	최근 논의내용(staff paper, 2011년 7월~9월)
Bucket1에 대해 다음의 3가지 대안(A안, B안, C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논거로 C안을 지지함 A 안 : 현재 기대신용손실의 1년 분 B 안 : 기대신용손실 중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Time-proportional amount)* C 안 : 최초 기대신용손실 1년 분 + 미래 기대신용손실 변동치의 총 금액	IASB는 three-bucket approach의 제시 이후 금융기관의 실무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B안과 C안의 경우 과거 자료 추적(tracking)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이에 따라 실무 적용가능성이 높은 A안(현재 기대신용손실의 1년분)을 지지하고 있음.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적용기간에 대한 논의(1년 or 2년)가 이루어졌으나 현행 리스크관리 관행, 감독기관 요구사항 등의 고려시 1년 적용이 선호되고 있음.

\* 추가공개초안(SD) 정상채권집합에 대한 총당금 설정방법(IASB관점)

Ⓧ Bucket 2와 Bucket 3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Bucket 2와 Bucket 3에 대해서는 추가공개초안(SD)의 부실채권집합(bad book)과 같이 잔여만기 동안의 기대신용손실 전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Bucket 3의 총 기대신용손실이 Bucket 2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Bucket 3의 경우 개별적으로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손실발생 금액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Bucket 1과 Bucket 2는 기대신용손실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평가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으며, Bucket 3는 기대신용손실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므로 개별평가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3)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에 대한 고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이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또는 상품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은 위험회피활동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지 않았을 때 제정되었다. 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건이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와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즉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규정 중심적(rule-based)이어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sup>20)</sup>가 있었다.

20)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1년 1월 31일 결국 최초 공개초안을 보완하는 추가공개초안

- \* 위험관리활동의 미 반영(Not reflecting risk management appropriately)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이 위험관리목적상 효과적이나 IAS 39상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Complexity and confusion in hedge accounting)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해 회계처리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
- \* 불충분한 공시(Insufficient disclosures)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이 재무제표에 충분하게 공시되지 않는다고 판단

1) 위험회피 유효성에 대한 목적중심적 접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전통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요건(예 : 80~125%)을 규정하여 왔으나 공개초안에서는 80~125% 규정 대신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중심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위험회피효과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회피효과평가의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즉, 위험회피관계는 편이 없는(unbiased)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비효과성을 최소화<sup>21)</sup>시켜야한다. (2) 위험회피관계는 의도하지 않은 상계(accidental offsetting)를 제외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계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공개초안에서는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은 질적기준(qualitative basis) 또는 양적기준(quantitative basis)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방법
질적 기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주요조건(critical terms)이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주요조건을 비교(critical-terms-match approach)
양적 기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critical terms)이 일치하지 않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상계 정도와 위험회피의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	양적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함. 기업은 위험회피의 복잡성 정도, 자료의 이용가능성, 상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Supplementary document to ED : SD)을 발표하면서 주요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21)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IASB는 “편이 없는 결과(unbiased)”와 “예상되는 비효과성 최소화(minimizing expected hedge ineffectiveness)”는 포괄적 규정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실제 위험회피에 사용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으로 정의되는 “경제적 헤지(Economic Hedge)”에 기초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 2)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 경감<sup>22)</sup>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는 현행 IAS 39의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 모형과 유사하다. 다만, 공개초안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단순화를 통해 실무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분	위험회피대상항목 가치 변동분	위험회피수단 공정가치 변동분
미인식 확정계약 외	재무상태표 : 자산 또는 부채 처리 포괄손익계산서 : 기타포괄손익 처리	포괄손익계산서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 처리
미인식 확정계약	위험회피대상의 후속적인 변동 누계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에 대응하여 표시	

현행 IAS 39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직접 가감하여 표시하는데 공개초안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별도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3)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성 유지

공개초안에서는 최초의 위험관리목적이 동일한 경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는 것을 재정렬(rebalancing)이라고 하고<sup>23)</sup>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하기 위해 재정렬을 고려한 후에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즉, 최초의 위험관리목적이 동일한 경우 위험회피효과성이 미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재정렬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관리목적이 변동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sup>24)</sup> 다만, 위험

22)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상태표의 표시방법을 기존 IAS 39에 따라 유지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므로, 공개초안에 따른 내용은 변경이 예상된다.

23)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논의에서 재정렬(rebalancing)의 범위를 위험회피회계 적용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에 대한 수량 조정으로 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회피관계가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과 목적을 충족하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업은 자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없다.

#### 4) 위험회피회계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방향을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기준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①에 상되는 비효과성을 최소화하는 편이 없는 결과(unbiased result) 및 ②우연하지 않은 상계효과(other than accidental offsetting)의 개념을 제안하고 유효성테스트의 80~125% 규정을 삭제하여 금융기관이 효과적인 양적 평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실무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즉, 위험회피 관계를 질적인 평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 평가기준도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비효과성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것을 보완하였다. 다만 비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비효과성 측정은 매 회계기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준서 개정으로 금융기관들이 실무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공개초안에서는 위험관리실무를 고려하여 ①파생상품이 결합된 통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②비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③보유 중인 거래에 대한 층화접근법(Layer Approach) 적용 및 ④순액(Net Position)에 대한 위험회피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실무상 기업들이 층화접근법 적용시 비율접근법보다 높은 효과성 평가결과 도출이 유리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위험회피전략상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예 : 자산 100과 부채 80으로 구성된 순외화포지션 20)<sup>25)</sup>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개초안 적용시 실무적인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연합 재정위기로 인해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24) IASB는 2011년 6월 staff paper 미팅에서 사전적 재정렬에 대한 개념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25) IASB는 2010년 10월 미팅에서 모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일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는 현재 IASB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이 진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

(IASB)이 2011년 1월부터 진행해 온 개정방향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실무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주제별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의 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금융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사업모형의 정의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계약현금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폭 넓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손상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손상기준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재무프로세스와 금융기관의 기반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의 개정방향이 금융기관의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위험관리전략을 실무상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 유효성에 대한 양적 지표를 삭제하고 복잡성을 경감하였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렬(rebalancing)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실질적으로 실무 적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수년 간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용 시 예상되는 시사점을 검토한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IFRS 9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보다 더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진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9.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 금융감독원. 2010. “은행업 감독규정 정비방안”. 보도자료(2010. 8. 24).
- 금융감독원. 2010.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변경(안)”(2010. 11. 17).
- 노옥진. 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재무적 관점으로”.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332.1-10-19.
- 삼일회계법인 공저. 2011. IFRS기준서별 해설(I)(II). 삼일회계법인.
- 오인환, 장동기, 정대길, 김선화. 2011. “파생상품의 이해와 헤지회계”. (주)영화조세통람.
- 최성호, 김인숙, 최관. 2011. “K-IFRS조기도입기업의 이익특성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 최재용. 2011.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설 정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332.1-11-21.
- 한국회계기준원. 은행연합회. 2010. “IFRS 9 개정안에 대한 설문”.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1.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IFRS 9 Exposure Draft, IASB, ED. 2009.7~2009.11.
- IFRS 9 개정 초안(Exposure Draft), IASB, ED. 2009.12.
- IFRS 9 Exposure Draft, IASB, ED. 2011.1.

## 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change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Chung, Ho-Jun\*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al review and study on change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hich has been resulted from credit crunch in 2008 and EU fiscal crisis since 2010, 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Institutes or banking industry in Korea.

Findings are as follws. First, it was found that application of new standard to simplify the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banks to justify the qualification of business model or characteristics of contractual cash flow in case of sales of loan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nd liquidation of them through SPC.

Second, several impairment regulation suggested in exposure draft since 2009 might have conflict for banks to apply for their practice without fully understanding on their financial reporting system, risk management system and so on.

Finally, the finding shows that suggested change of hedge accounting may help banks' own hedge practice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into accouting process by loosing the effective test, complexity of application and adopting of rebalancing concept for continuous hedge accounting.

This paper is meaningful to pre-examine the changing direc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standard researched by both IASB and FASB for years and to review on potential issues and lesson learned when financial institutes and banking industry in Korea.

**Key Words** : Change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 KICPA of Samil PricewaterhouseCoopers